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9. 30 선고 2015가단39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나57417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9. 30 선고 2015가단3972 판결

전문

원고 A

피고 1. B

2. 대한민국

변론 종결 2016. 8. 26.

판결 선고 2016. 9. 3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은 원고에게 사천시 C 임야 1,28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9.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대한 민국은 이 사건 임야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1917. 12. 10.(1930. 10. 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고, 망인의 상속재산은 장남인 피고 B이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1982. 9. 20. 이 사건 임야에 연접한 사천시 E 목장용지 19,999㎡(이하 '연접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82. 10. 4. 접수 제124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F(1971. 3. 31. 사망)은 1956. 5.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임야를 매수하여 밤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였고, 원고는 망 F 사망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여 관리하면서 1970.경에는 감나무를 식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1982. 9. 20. 연접 토지를 매수하여 목장을 조성,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목장 운영에 필요한 사료 저장소, 목초지로 사용하거나 밭으로 개간하여 사용하면서 현재까지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1982. 9. 20.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가 연접 토지를 매수한 1982. 9. 20.부터 20년이 지난 2002. 9.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을 대위한 원고에게 미등기 상태로서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 기재된

망인의 주소 중 지번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임야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영상,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G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중 일부에 벚짚을 적재하여 사료를 만들고 저장하였는데, 그 장소는 사료를 운반하기 좋은 도로와 접한 토지라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는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으므로 G이 이 사건 임야의 현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밭으로 개간하여 감자를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의 현장 검증 당시 도로에 인접한 밭에서 감자가 경작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증인 G의 증언 당시 피고 소송수행자가 제시한 각 항공사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는 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감자가 경작되고 있는 밭이 이 사건 임야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소유의 연접 토지와 연접되어 있다는 앞서 본 사실에 증인G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취득시효의 완성과 관련한 나머지 요건사실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